

판문점 주소 되찾았다... '관할 조례' 파주시의회 통과

판문점 주소부여 조례가 입법예고(본보 11월12일지 1면)된 가운데 이 조례가 파주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판문점에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행정구역이 부여되는 등 67년 만에 파주 땅으로 완전히 회복됐다. 파주시가 지난 5월부터 판문점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7개월 만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가 제출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판문점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 판문점 남측 지역 지적복구 촉구결의안을 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에 판문점조례안과 관련해 규제영향 분석심사결과서 심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동보서 심의 등을 완료했다.

판문점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로 현재

행정구역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67년만에 파주 땅으로 완전 회복 시 지적복구 프로젝트 7개월 결실

주소가 없는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등 19필지 7만2천805㎡ 일원은 앞으로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주소가 부여된다. 인근 DMZ(비무장지대) 주변 마복구 토지였던 장단면 덕산리 일원 116필지 51만9천524㎡도 파주시가 관할한다.

백정호 파주시 지적팀장은 "판문점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지적복구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며 "무등록 건물인 평화의 집을 건축물대장에 정식 등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자유의 집은 주소를 조정(조선리 468의1에서 선적리 359로)하는 등 건물번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판문점 평화의 집 등 DMZ

남측 일원에 대한 지적복구를 위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통일부, 경기도 등과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판문점 등 주변에 대해 행정구역 결정승인을 받았다.

최종환 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마복구 토지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파주 땅이 기존 672만여㎡에서 59만2천여㎡가 늘어난 역사적인 쾌거였다"면서 "판문점 브랜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은 남문(南門)의 구 경기도 장단군 고장 이름에서 비롯됐다. 6.25전쟁 마바지인 1953년 7월27일 도로변에 초가집 4채가 있던 남문에서 천마를 치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주소가 없어 지적복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북도·특례시 법안 이번주 분수령

국회 행안위·법제사위서 논의

오늘 행안위서 북도 등 입법공청회 1987년 분도 논의 이후 첫 개최 내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다뤄 주민주권 강화·자치권 확대 담야 법제사위 통과면 본회의서 표결

경기북도 설치와 특례시 등 경기지역 현안 법안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안건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을)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연천)이 발의한 법안 2건이다.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경기도 분도 논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하는 지난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첫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33년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논리에 밀려 진전 없이 기한만료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

형이다.

개정안은 주민주권 원칙 강화,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광역단체(시·도)와 기초단체(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사항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모두 적용된다. 라다습기자